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470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검 사 박재형(기소), 김규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미주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원룸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은 2025. 1.경부터 2025. 6. 초순경까지 그곳 D호에 거주한 세입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5. 5. 3. 19:44경 포항시 일원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놈 저놈 많이 만나서 모텔도 많이가고 지나면 안하고 못한 놈마 바보다 빠구리도 많이 해라 갠잖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5. 5. 3. 14:39경부터 2025. 5. 15. 2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5. 5. 15.경부터 2025. 5. 20.경까지 사이 포항시 남구 B 원룸에서, 그곳 계단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이 치마바지를 입은 모습을 보자, 계단 아래에서 손으로 계단 위에 서있는 피해자의 치마 부분을 잡아 들춘 다음, 피해자에게 "야 이쁘다, 엉덩이가 이뻐서 잘 어울리는거다. 맞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캡처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치마바지 사진 첨부), 치마바지 사진

1. C(가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 및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관리하는 원룸의 세입자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바지의 치마를 잡아 들추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나소라 _____



[별지]

<범죄일람표>

1	2025. 5. 3. 14:39경	포항시 일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디가노 청바지 이쁘던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	[가명, 여, 27세]	
2	2025. 5. 3. 18:45경	"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ㅋㅋ 또 만남 생겼나 제주도 좋다 난넌 이구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	"	
3	2025. 5. 3. 19:44경	"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놈 저놈 많이 만나서 모텔도 많이가고 지나면 안하고 못한 놈마 바보다 빠구리도 많이 해라 갠잡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	"	
4	2025. 5. 3. 20:57경	"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니 보니까 입꼬리 올라가고 눈 축축한게 남자 밟히는 상이던데 맞제 성관계 좋아하고 밟히는 상이야 맞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	"	
5	2025. 5. 10. 21:55경	"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생길때까지 내가 남친 해줄게 맞난거도 묵고 쟈만 애기오 하고 놀러도가고 좋은 남자친구 생기면 어제든지 보내줄게 어땠노"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	"	
6	2025. 5. 15. 22:43경	"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청바지 이쁘더라 섹시 하던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	"	
7	2025. 5. 15. 22:44경	"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뒤 힙 라인도 이쁘게 빠졌더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	"	
8	2025. 5. 15. 22:45경	"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니 힙이 이쁜거 같더라 그래서 뒷태가 이쁘게 나오는거지 맞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	"	